

제111회 해양경찰위원회 정기회의(화상) 개최 결과

□ 일시·장소: '24. 10. 24.(목) 14:00 ~ 15:00 / 해양경찰위원회 회의실

□ 참석자

○ (주재·참석) 위원장 위임으로 총무위원이 위원회 회의실에서 주재

┌ (위원회) 총무위원 위원회 회의실 출석 / 위원장 등 5명 온라인 출석

└ (해경청) 차장, 기획조정관, 안전 소관 국·과장, 위원회담당관 등 6명

□ 개최 결과: 심의·의결 5건 (수정의결 3)

【심의·의결 5건】

연번	형식	안건명	내용	심의결과	부서
1	훈령	「해양경찰청 합정 유류 운용규칙」 제정안	· 연간 약 1,2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합정 유류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 ※ (주요내용) △ 목적 및 정의 △ 유류 관리·운용 △ 관리전환 △ 검사 및 검수 △ 품질관리 △ 시료채취 및 보관 등 수정사항 유류 수급 시 <u>검사와 검수를 구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</u> 위해 <u>검수단 구성원 중 검사공무원을 검수공무원으로 변경</u>	수정의결	
2	예규	「유류방지 운영 규칙」 일부개정안	· 유류바지의 관리주체 변경 및 바지정장의 직무 구체화 ※ (관리주체) 장비관리과장 또는 기획운영과장 → 소속기관장 (정장직무) 기존 직무에 임무를 추가(사고처리, 안전표지 게시 등) · 유류방지 성능유지를 위한 예방정비(PMS) 조항 신설 · 「환경오염피해구제법」에 따른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규칙에 명시 등	원안의결	장비관리
3	예규	「해양경찰청 규격관리 규칙」 일부개정안	·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* 정의의 간결화 및 명확화 * '규격', '규격서', '정부규격', '해양경찰규격' 등 용어 정의 수정 · 규격관리 및 규격심의 검토·결재 주체*의 명확화 * (기존) 해양경찰청장, 총괄물품관리관 → (개선) 본청 장비관리과장 · 해양경찰청 규격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선 ※ (주요내용) △ 위원장 명확화(총괄물품관리관→장비관리과장) △ 서면 심의 근거 마련 △ 위원 지명권자 격상(장비과장→장비국장)	원안의결	

연번	형식	안건명	내용	심의결과	부서
4	훈령	「해양경찰청 공용차량 관리규칙」 일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관련 법령인 「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」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용어를 규칙에 반영 (공무차량→공무용 차량) · 관할구역·규모·업무량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차량 정수 배정을 위해 소요계획의 제출일자* 변경 등 * (기존) 3월 말 → (개선) 전년도 12월 31일 <p>수정사항 경찰 경비작전 차량증은 <u>해경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발급</u>하고 <u>해양경찰관서의 장이 관리</u>하도록 발급주체를 명확화</p>	수정의결	
5	훈령	「무기·탄약류 등 관리 규칙」 전부개정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무기·탄약 및 진압장비의 관리에 관한 행정규칙을 통합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margin: 5px 0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2px; margin-right: 5px;">무기·탄약류 등 관리규칙</div> <div style="margin: 0 5px;">(통합) →</div> <div style="border: 2px solid blue; padding: 2px; margin-left: 5px;">무기·탄약 및 진압장비 관리 규칙</div> </div> · 무기탄약고 점검 강화(1인→2인) 및 무기탄약 관리전환 등 일부권한을 지방해양경찰청에 위임 <p>수정사항 무기·탄약 관리 관련 직책(취급담당자, 관리책임자)을 명시하고 그에 따른 임무(주기별 점검)를 규정하도록 수정</p> <p>수정사항 1인 근무 출장소의 무기·탄약고 열쇠는 <u>해경서장의 판단</u>하여 <u>인접파출소 또는 출장소에 보관</u>할 수 있도록 <u>판단 주체를 명시</u></p>	수정의결	장비 관리